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2서식] <개정 2021. 6. 23.>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정보공개 청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(대리인)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			리기간			
청구인	성명(법인·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				생년월일(성별) ()			
	여권·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작성)				사업자(법인·단체)등록번호			
	주소(소재지)			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		
	전자우편주소				팩스번호			
청구 내용								
공개 방법	[]열람·시청 []	사본·출력물 []전자파일	[]]복제·인화물	[]기타()	
수령 방법	[]직접 방문 []	우편 []팩스 전송	[]]정보통신망	[]전자우	편 등()
수수료	[]감면 대상임	[]감면 대싱	아님				
	감면 사유							
	※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,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 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.								
_ 1 0 12						년	월	일
청구인						(서명	또는 인)	
(접수 기관의 장) 귀하 된 수 중 보다 보다 하는 기관의 장이 가지 않는 기관의 기관의 기관의 기관의 기관								
 접수번호			덬 수 증 구인 성명					
접수부서		접	수자 성명		(서명 또는 인)			
귀하의 청구사	l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	었습니다.				년	월	일
		접 수	기 관 징	는 직 (인			

유 의 사 항

- 1.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.
- 2.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,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www.simpan.go.kr)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3.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4.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 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